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		처리기간 20일	
신청인		성명			생년월일		
		주소			전화번호		
		전자우편주소					
신청 이유							
지정 예정지	소재지						
	면적						m²
이의신청 면적							m²

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		수수료 없음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	→	현지 조사 확인	→	심 의	→	결정 통지
처리기관: 산림재난방지기관(지방자치단체, 지방산림청)								